

2025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매뉴얼

본 매뉴얼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5.12월 기준 연말정산 관련 법령과 사례 등을 간략하게 수록한 것입니다. 번역상의 이유로 세법의 한국어 원문과 외국어 번역문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본 매뉴얼의 내용을 실무에 직접 적용하시는 경우 한국어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요	1
II.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2
III. 연말정산 계산사례	16
IV.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18
V.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6

I.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이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예: '25.1.1.~12.31.)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최종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초과세액을 환급하고, 반대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의 결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 시기

- ①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②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Ⅱ.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1.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며,
 -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납세의무의 범위와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주자 여부에 따른 납세의무 범위의 차이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전세계 소득)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 단기 거주 외국인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①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및 ②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부담

□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같습니다.
 -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총 급 여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특별 소득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	X
	주택자금	○	X	○	X
그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X	X (단 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는 가능)	X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X	○	X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X	○	X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X	○	X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X	○	X
	월세액 세액공제	○	X	○	X
	납세조합공제	○	○	○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등)	○	X	○	X
	외국납부세액공제	○	X	○	X

2.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례규정

①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개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3.1.1. 당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도 감면기간 10년 적용

- 다만,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22.12.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근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합니다.

- **(적용요건)** 외국인 기술자가 ①~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② 이공계 등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 **(적용절차)**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9% 단일세율)

- **(개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6~45%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19%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적용절차)**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③ 외국인 교사 소득세 면제

- **(개요)** 우리나라와 외국인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외국인 교사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면제요건 충족 시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마다 다르므로 우리나라와 외국인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법령 → 조세조약

3.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세법

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 수	개정 전	개정 후
1명	15만원	25만원
2명	35만원	55만원
3명 이상*	35만원+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55만원+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 (예시) 자녀가 4명인 경우 공제금액 = 55만원 + (4명-2명)×40만원 = 135만원

2 해외 우수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가 추가되었습니다.
- (우수 해외인재 요건) 첨단산업 분야 국내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아래 유형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연봉	1인당 GNI 3배 이상 (약 1.5억원)	1인당 GNI 4배 이상 (약 2억원)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학력	세계 100대 이공·자연·공학석사 or 박사학위 취득	이공·자연·공학석사 or 박사학위 취득	
경력	8년 이상 근무 (세계 500대 기업 3년 포함)	8년 이상 근무	
	박사 취득 후 5년 근무 (글로벌 우수연구기관 3년 포함)	박사 취득 후 5년 근무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종전에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공제대상자 확대로 외국인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 개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표



□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내용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예)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학자금, 식사대,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등																				
(=) 총급여액	과세대상 근로소득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 ×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td> </tr> <tr> <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td> </tr> <tr> <td>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td> </tr> </tbody> </table> <p>※ 공제한도 : 2,000만원</p>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p>①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p> <p>○ 나이요건(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직계존속</th> <th>직계비속</th> <th>형제자매</th> <th>위탁아동</th> <th>수급자</th> </tr> </thead> <tbody> <tr> <td>60세 이상 (65.12.31.이전)</td> <td>20세 이하 (05.1.1.이후)</td> <td>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td> <td>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td> <td>제한없음</td> </tr> </tbody> </table> <p>②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대상</th> <th>경로우대 (70세 이상)</th> <th>장애인</th> <th>부녀자 (부양/기혼)¹⁾</th> <th>한부모²⁾</th> </tr> </thead> <tbody> <tr> <td>공제금액</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1)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①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②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 불가(중복 시 한부모공제 적용)</p>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60세 이상 (65.12.31.이전)	20세 이하 (05.1.1.이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¹⁾	한부모 ²⁾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60세 이상 (65.12.31.이전)	20세 이하 (05.1.1.이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¹⁾	한부모 ²⁾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구분	내용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본인부담금 : 전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p>① 보험료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전액공제) <p>② 주택자금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600~2,000만원 한도 																
(-) 그 밖의 소득공제	<p>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p>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table border="1" data-bbox="494 974 1380 1220"> <thead> <tr> <th>근로소득금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td> <td>600만원</td> </tr> <tr> <td>4천만원~6천만</td> <td>500만원</td> </tr> <tr> <td>6천만원~1억원</td> <td>400만원</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p>③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table border="1" data-bbox="494 1467 1380 1646"> <thead> <tr> <th>구분</th> <th>소득공제액</th> <th>공제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20년 이후 투자분</td> <td>출자금액의 10% (100%, 70, 30%)*</td> <td>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투자신탁은 300만원</td> </tr> </tbody> </table> <p>*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p> <p>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6천만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구분	소득공제액	공제한도액	'20년 이후 투자분	출자금액의 10% (100%, 7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투자신탁은 300만원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6천만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구분	소득공제액	공제한도액															
'20년 이후 투자분	출자금액의 10% (100%, 7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투자신탁은 300만원															

구분	내용																		
(-) 그 밖의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하는 250만원 한도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추가공제 · $\min[\text{한도초과액}, \{(\text{전통시장 사용분} \times \text{공제율}) + (\text{대중교통 이용분} \times \text{공제율}) + (\text{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cdot \text{신문} \cdot \text{영화 관람료} \cdot \text{공연} \cdot \text{박물관} \cdot \text{미술관} \cdot \text{수영장} \cdot \text{체력단련장}^* \text{ 사용분} \times \text{공제율})\}(\text{연간 300만원 한도})]$ * 수영장·체력단련장 사용분은 '25.7.1.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 <p>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p>⑥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삭감액(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해당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50% 공제(연 1,000만원 한도) <p>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연 240만원 한도)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p>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p> <p>*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신용카드, 벤처투자 조합 등 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p>																		
(=) 종합소득 과세표준	<p>(=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p>																		
산출세액	<p>○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본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과세표준 × 6%</td> </tr> <tr> <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 <td>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td> </tr> <tr> <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td> <td>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td> </tr> <tr> <td>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구분	내용
(-) 세액감면	<p>① 정부간 협약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해당 근로소득금액 상당액을 감면 <p>② 원어민 교사 소득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우리나라와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면제요건 충족 시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다만, 조세조약마다 면제요건이 다르므로 개별 조세조약 검토 필요 - (감면신청) 면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3))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지급자인 학교에 제출하며, 학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 <p>③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소득세의 50%(7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2.12.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7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p>④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 200만원 한도) - (감면제외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 - (감면제외업종) 법무·회계·세무관련 등 전문서비스업, 병원 등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감면신청) 근로자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구분	내용										
(-)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의 경우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인 경우 (71만 5천원 + 초과금액의 30%) 공제 - (공제한도) 74만원, 66만원, 50만원, 20만원 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총급여</th> <th style="width: 50%;">세액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3,300만원 이하</td> <td>74만원</td> </tr> <tr> <td>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td> <td>MAX(①, ②) ①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② 66만원</td> </tr> <tr> <td>7,000만원 초과</td> <td>MAX(①, ②) ①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② 50만원</td> </tr> <tr> <td>1억 2천만원 초과</td> <td>MAX(①, ②) ① 50만원-【(총급여액-1억 2천만원)×1/2】 ② 20만원</td> </tr> </tbody> </table>	총급여	세액공제금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 ②) ①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② 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 ②) ①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② 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MAX(①, ②) ① 50만원-【(총급여액-1억 2천만원)×1/2】 ② 20만원
	총급여	세액공제금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 ②) ①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② 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 ②) ①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② 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MAX(①, ②) ① 50만원-【(총급여액-1억 2천만원)×1/2】 ② 20만원									
	②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녀) 8세 이상 자녀, 손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3명 :95만원, 4명 : 135만원, 5명 : 175만원) - (출산·입양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③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 공제한도 및 공제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40%;">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th> <th style="width: 30%;">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 style="width: 30%;">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5백만원(55백만원) 이하</td> <td>600만원</td> <td>15%</td> </tr> <tr> <td>45백만원(55백만원) 초과</td> <td>(900만원)</td> <td>12%</td> </tr> </tbody> </table>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백만원(55백만원) 이하	600만원	15%	45백만원(55백만원) 초과	(900만원)	12%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백만원(55백만원) 이하	600만원	15%									
45백만원(55백만원) 초과	(900만원)	12%									
④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 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⑤ 외국납부세액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발생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 - 감면대상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구분	내용
----	----

(-)
세액공제

⑥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

⑦ 보험료 세액공제

- 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 납입액의 12%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납입액의 15%(연 100만원 한도)

⑧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항목) 의료비·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총급여의 3% 초과분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공제대상자	공제한도	공제율
㉓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자,난임수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한도없음	15% (난임수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㉔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⑨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 공제

공제대상자	공제항목	공제한도
① 본인	대학원,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상환액 등	전액
②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300만원
③ 초·중·고등학생	등록금·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 50만원)	1명당 300만원
④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900만원
⑤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구분	내용																			
(-) 세액공제	<p>⑩ 기부금 세액공제</p> <p>-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내의 기부금의 15% 공제 (1천만원 초과분은 30%)</p> <p>※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여 공제</p> <table border="1" data-bbox="464 629 1394 1503"> <thead> <tr> <th data-bbox="464 629 676 707">기부금 종류</th> <th data-bbox="676 629 1082 707">공제한도</th> <th data-bbox="1082 629 1394 707">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64 707 676 815">① 정치자금 기부금</td> <td data-bbox="676 707 1082 815">【근로소득금액】×100%</td> <td data-bbox="1082 707 1394 815">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td> </tr> <tr> <td data-bbox="464 815 676 916">② 고향사랑 기부금</td> <td data-bbox="676 815 1082 916">【근로소득금액-①】×100% (연간 한도 2,000만원)</td> <td data-bbox="1082 815 1394 916">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100</td> </tr> <tr> <td data-bbox="464 916 676 1048">③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td> <td data-bbox="676 916 1082 1048">【근로소득금액-①-②】×100%</td> <td data-bbox="1082 916 1394 1048"></td> </tr> <tr> <td data-bbox="464 1048 676 1149">④ 우리사주 조합기부금</td> <td data-bbox="676 1048 1082 1149">【근로소득금액-①-②-③】×30%</td> <td data-bbox="1082 1048 1394 1149" rowspan="3">「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td> </tr> <tr> <td data-bbox="464 1149 676 1361">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td> <td data-bbox="676 1149 1082 1361">【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10% +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td> </tr> <tr> <td data-bbox="464 1361 676 1503">⑥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 외)</td> <td data-bbox="676 1361 1082 1503">【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30%</td> </tr> </tbody> </table>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	공제율	①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고향사랑 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100% (연간 한도 2,000만원)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100	③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100%		④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3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10% +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⑥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30%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	공제율																		
①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고향사랑 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100% (연간 한도 2,000만원)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100																		
③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100%																			
④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3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10% +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⑥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30%																			
결정세액	<p>(=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p> <p>※ 외국인근로자 중 단일세율 적용신청자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 19%</p>																			
(-) 기납부세액	<p>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p>																			
차감징수세액	<p>(=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p> <p>※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p>																			

※ 본 세액계산표는 관련 세법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적용요건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매뉴얼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공제·감면 적용요건 및 공제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연말정산 계산사례

사례 1.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1)

□ 기본사항

- James는 2025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음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비과세소득 ₩5,000,000 포함)
- 가족사항 : 본인(James, 만 36세), 부인(Jane, 만 38세)
 - ☞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 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자임
- 지출내역 : 국민연금 ₩2,500,000,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 기납부세액 ₩44,334,000

기본세율 적용 시 세액계산		19% 단일세율 적용 시 세액계산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비과세근로소득	(-) 5,000,000		
총급여액	₩195,000,000		
근로소득공제	16,650,000		
근로소득금액	₩ 178,350,000		
인적공제			
- 기본공제	3,000,000		
연금보험료공제	2,500,000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그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 171,3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 45,173,000		
근로소득세액공제	200,000		
결정세액	₩ 44,973,000	결정세액	₩ 38,000,000
기납부세액	(-) 44,334,000	기납부세액	(-) 44,334,000
차감징수세액	₩ 639,000	차감징수세액	₩ △6,334,000

사례 2.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2)

□ 기본사항

- James는 2025년도에 ABC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함
 - 월급여 ₩3,500,000(회사에서 월세보전으로 지급한 ₩500,000 포함)
- 가족사항 : 본인(만 40세), 부인(만 35세), 아들(만 8세), 아버지(만 71세)
 - ☞ James와 그의 가족들은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들은 모두 연간 소득 금액이 ₩1,000,000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 지출내역 : 생명보험 ₩1,100,000, 국민연금 ₩1,200,000, 자녀교육비 ₩4,800,000(국내교육기관 지급분)
- 월별 원천징수 세액 ₩36,690(단일세율 선택하지 않음)

세액계산		항목 설명
연간근로소득	₩42,000,000	
비과세근로소득①	(-) 0	① 회사에서 월세보전 목적으로 지급한 ₩500,000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총급여액	₩42,000,000	
근로소득공제②	11,550,000	② 7,500,000+(42,000,000-15,000,000)×15%
근로소득금액	₩ 30,450,000	
인적공제		
- 기본공제③	6,000,000	③ (4명 × 1,500,000)
- 추가공제④	1,000,000	④ (1명× 1,000,000), 경로우대
연금보험료공제	1,200,000	
특별소득공제	0	
과세표준	₩ 22,2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2,077,500	⑤ (공제액) : min(①,②)
근로소득세액공제⑤	660,000	① 715,000 + (2,077,500-1,300,000)×30%
		② (공제한도) : max(①,②)
		① 740,000 - [(42,000,000-33,000,000)×0.8%]
		② 660,000
자녀세액공제	150,000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⑥	120,000	⑥ 1,000,000 × 12%
- 교육비⑦	450,000	⑦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min(4,800,000, 3,000,000) × 15%
결정세액	₩ 697,500	
기납부세액⑧	(-) 440,280	⑧ 36,690×12개월
차감징수세액	₩ 257,220	납부할 세액

IV.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 137조

3**저는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내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지만, 국내에 세금은 내야 합니다.
- 납세자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납세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때 납세자는 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150조

4**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5**19% 단일세율 적용 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비과세되나요?**

-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6**19% 단일세율 적용 기산일이 되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 관련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7**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다르므로 단일세율 적용이 유리한지 여부는 개인마다 상이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신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금액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를(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10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국외 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해당 학원 등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11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이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12

2024년 12월분 보험료를 2025년 1월에 납부했습니다. 이 런 경우 보험료는 어느 연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025년 1월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025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13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14

가족 명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15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면제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각국의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법령 > 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관련 조약: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 위와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16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대하여 차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7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을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18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했으나 일부 소득공제·세액

공제 등이 누락되어 추가로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3조

19 연도 중에 퇴사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 대신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 연말정산 세액계산 결과 발생한 근로자의 환급금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이 발생되어 체불임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비거주자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비거주자의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2조

'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 납입분까지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5년 납입분부터는 외국인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외국인의 경우 근로소득자이면서 세대주의 배우자인 거주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V.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로,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득공제·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ometax.go.kr>

나.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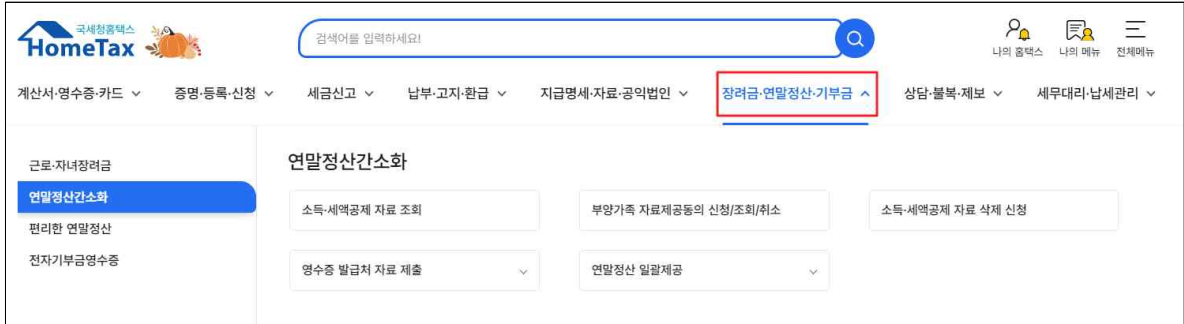
- 홈택스 첫 화면 상단의 [로그인] 클릭 ⇨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클릭

-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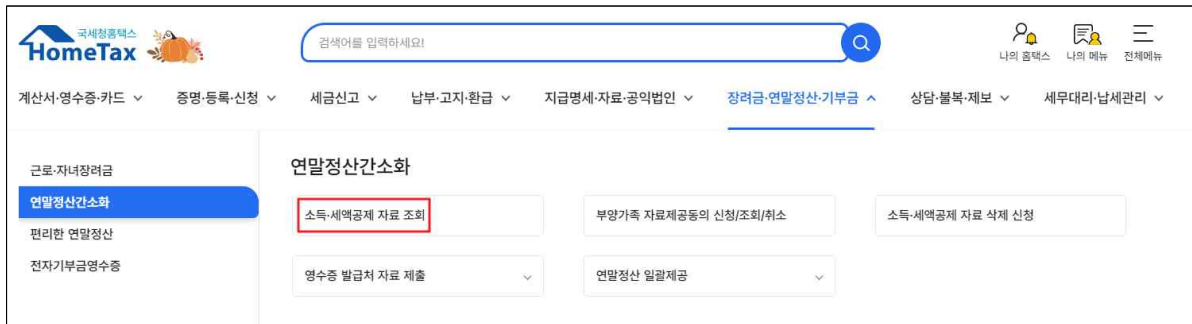
*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도 로그인 가능,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도 가능

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출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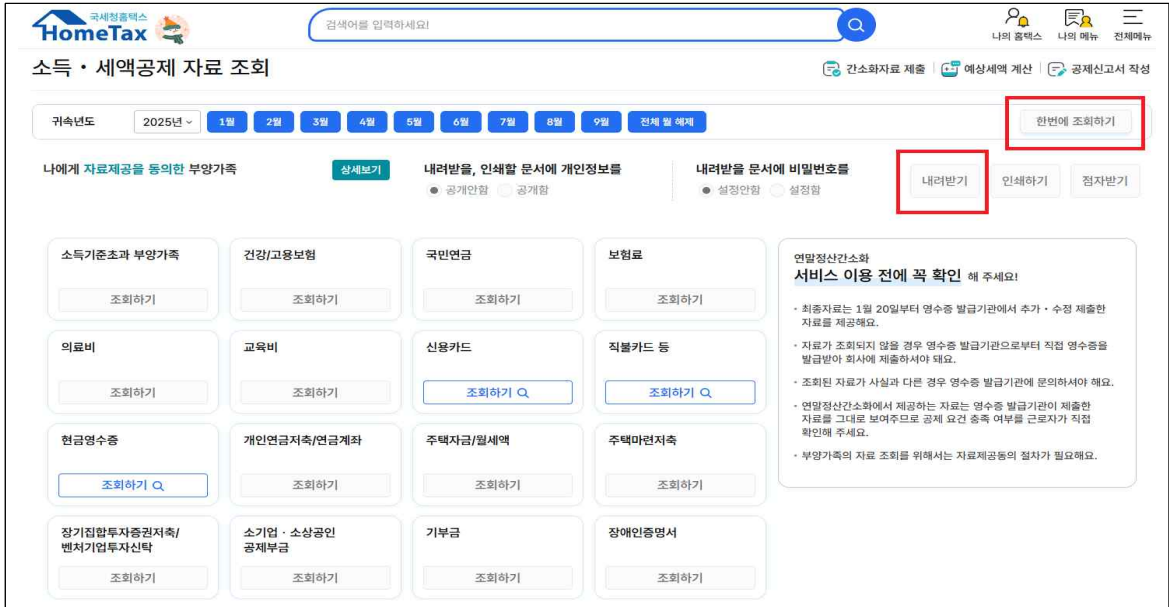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표시
-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이 조회되며,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한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됩니다.
 - ※ 월별(일자별) 지출(사용)금액을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출력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외국인등록번호로만 수집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보험가입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아닌 여권번호 또는 임시번호 등으로 가입한 경우 지출한 보험비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자파일 제출

국세청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종이문서 출력·제출·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무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전에 전자문서 자료추출 프로그램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방문해서 ‘자료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다운로드하기

-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 조회방법은 [2] 소득공제·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와 동일하며, 조회 후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PDF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하여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PDF다운로드 시 문서의 비밀번호(임의의 7자리로 설정가능) 설정여부 선택 가능

※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성명(외국인등록번호 앞 6자리) - 항목명.PDF”의 형태로 제공되며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가능

나. 다운로드한 전자문서 활용하기(Paperless 연말정산)

- 근로자는 다운로드한 전자문서를 소속 회사에 제출합니다.
- “종이 없는 연말정산”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다운로드한 전자문서를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자동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가.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 공인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만 19세 미만(2007.1.1.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클릭
*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함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several menu items: '계산서·영수증·카드', '증명·등록·신청',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상담·불복·제보', and '세무대리·납세관리'. The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menu is expanded, showing '근로·자녀장려금',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and '전자기부금영수증'. The '연말정산간소화' menu is further expanded, showing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and '연말정산 일괄제출'. The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 조회하고자 하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한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신청(첨부서류 파일업로드),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함(이용방법 : 나-1)-②, 나-2) 참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자료제공동의 신청
제공동의 현황 조회
제공동의 진행상황
(팩스신청, 온라인신청)
제공동의 취소 신청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 주세요.


 본인인증 신청
자세히보기


 미성년자녀 신청
자세히보기


 온라인 신청
자세히보기


 팩스 신청
자세히보기


 세무서방문 신청
자세히보기

귀속년도

2025년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

뒷자리 7자리

<(2025년 귀속)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안내>

- 부양가족이 만 19세미만의 자녀(2007.01.01 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는 부모인 근로자가 부모의 인증서로 인증을 하여 신청하면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된 자녀(2006.12.31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 2007년 출생자녀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시 성년이 되므로 미리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특히,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나.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 인증수단(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또는 팩스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신청」 클릭 → 4. 신청에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5. 사용자인증 선택에서 본인인증 수단(간편인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선택 → 본인 인증하여 신청

② 온라인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1. ~ 2. 동일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신청」 클릭 → 4.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다음] 클릭 → 5. [첨부서류 대상 파일 선택]에서 신분증 사본의 [파일찾기] 클릭 → 6. 신분증 사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 → 7. [첨부서류 제출하기] 클릭
*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 자료 조회자가 로그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필요

③ 팩스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1. 동일 →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클릭
3. 「팩스 신청」 클릭 → 4.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클릭 → 5. 출력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전송 (☎1544-7020)

2)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세무서 방문 신청」 클릭 → 4. [서식다운로드] 클릭

5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현황조회 및 취소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접속 →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4. →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선택하여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와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 조회 가능, 정상적으로 자료제공 동의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홈택스·모바일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 「제공동의 취소 신청」에서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음

6 소득·세액공제자료 활용 방법

- 가. 근로자는 출력한 자료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조회한 금액이 정확하다면 근로자가 이를 출력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입사(퇴사)자의 경우 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나. 서비스 제공시기
- '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는 '26.1.15.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사용)한 소득·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